

대법원 2024도12830
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도주치사)등 사건

보도자료

대법원 공보연구관실(02-3480-1895)

성형외과 시술 과정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다량 투여받은 피고인이, 시술 직후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인도에서 도보 이동 중인 피해자를 그대로 치면서 벽에 부딪혀 피해자를 다치게 한 후 현장에서 도주하였다는 「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¹⁾ 위반(도주치사) 등으로 기소되었다가 피해자가 사망한 후 특정범죄가중법 위반(도주치사) 등으로 공소장변경된 사안임

대법원 1부(주심 대법관 서경환)는, 검사 및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,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법 위반(위험운전치사) 및 약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, 특정범죄가중법 위반(도주치사) 및 도로교통법 위반(사고후미조치)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음(대법원 2024. 11. 20. 선고 2024도12830 판결)

1. 사안의 개요

가. 기초사실

- 피고인은 2023. 8. 2. 11:00경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미다졸람, 디아제팜(이하 '이 사건 약물') 성분의 수면 마취와 비타민 성분의 링거를 맞으며 얼굴 부위 슈링크 시술을 받은 후, 병원에서 계속 수면을 취하다가 16:00경 다시 이 사건 약물 성분의 수면 마취를 받음
- 피고인은 같은 날 20:00경 병원을 나가면서 의사로부터 '어지럼증 등 약기

1) 이하 '특정범죄가중법'

운이 남아 있으면 조금 더 휴식을 취하고, 운전하지 말라'는 주의를 받았는데도, 이를 무시한 채 이 사건 약물의 영향으로 인한 어지럼증으로 비틀거리는 등 걸음을 제대로 걸을 수 없는 상태에서 병원 인근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함

나. 공소사실의 요지²⁾

- ▣ 특정범죄가중법 위반(위험운전치사), 약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
 - 피고인은 2023. 8. 2. 20:00경 이 사건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서 롤스로이스 승용차를 운전함
 -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, 고가도로 옆 부분을 승용차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고 놀라 급격히 핸들을 오른쪽으로 과도하게 틀면서 실수로 브레이크가 아닌 액셀을 밟아, 그곳 보도 경계턱을 들이받고 튕겨 오르면서 마침 보도를 걸 어오던 피해자의 정면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 밀고 나가 보도에 연접한 건물 외벽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차체와 건물 외벽 사이에 끼인 채 차체 아래에 깔리게 함
 - 결국 피고인은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뒤, 2023. 11. 25.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
- ▣ 특정범죄가중법 위반(도주치사), 도로교통법 위반(사고후미조치)
 -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고 건물 외벽 등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, 현장에서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함

2. 소송경과

2) 공소장변경 후 최종 공소사실을 기재함[피고인은 2023. 9. 6. 기소되었고, 그 이후인 2023. 11. 25. 피해자가 사망하여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짐]

가. 제1심 ⇨ 전부 유죄

- ▣ 징역 20년

나. 원심 ⇨ 일부 유죄

- ▣ 특정범죄가중법 위반(도주치사) 및 도로교통법 위반(사고후미조치) 부분 **무죄**

-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,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

- 피고인은 사고 발생 이후 6분간 사고 현장에 머물렀고, 20:17경 사고현장에서 시술받은 병원으로 갔다가 20:20경 사고 현장으로 돌아옴
-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숨거나 도주하려는 행동을 한 바 없고, 당시에 사고 현장에는 경찰차량이 도착해 있는 상황이었음
- 피고인 주장과 같이 휴대전화를 찾기 위하여 사고현장에서 벗어나 시술받은 병원에 다녀왔던 것으로 보임
- 피고인은 경찰관에 의해 체포될 당시 자신이 사고운전자임을 인정함
- 당시 피해자의 상태에 비추어 피고인이 일시적으로 사고현장을 벗어났다고 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지연되었다고 보기 어려움

- ▣ 특정범죄가중법 위반(위험운전치사) 및 약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 부분 **유죄**

- 징역 10년

- ▣ 검사 및 피고인 상고

3. 대법원의 판단

가. 쟁점

- ▣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
- ▣ 당초 피고인이 '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'는 의사를 표시하여 통상재

판으로 진행되던 중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경우, 다시 피고인에게 국민 참여재판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여야 하는지 여부

- ▣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

나. 판결 결과

- ▣ 쌍방 상고 기각(원심 수긍)

다. 판단 내용

- ▣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

- 원심의 무죄 부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(도주치사)죄, 도로교통법 위반(사고후미조치)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

- ▣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

- 제1심의 소송절차에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잘못이 없음
- 피고인의 연령·성행·환경, 피해자와의 관계, 이 사건 범행의 동기·수단과 결과,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,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